

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23호

##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4월 1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4. 1. ~ 2022. 4. 15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| 구분 | 대상자           | 생년월일/<br>법인등록번호 | 과태료 고지번호            | 과태료(원)     | 체납자 주소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 | 박준걸           | 1988.02.28.     | 0178210274100004689 | 7,725,000  | 인천 계양구 장제로         |
| 2  | ㈜대영전기<br>정보산업 | 180111-1089***  | 0178210274100004973 | 3,862,500  |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 번길  |
| 3  | 권오경           | 1983.04.14.     | 0178200274100001057 | 19,116,000 |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 11 번길  |
| 4  | 이미라           | 1978.03.18.     | 0178200274100001058 | 31,860,000 | 대구 달서구 학산로 7 길     |
| 5  | 신용수           | 1963.07.09.     | 0178200274100003436 | 24,580,800 | 대구 동구 화랑로 100 길    |
| 6  | 정우열           | 1975.04.06.     | 0178210274100000092 | 4,267,500  | 경북 군위군 소보면 두개길     |
| 7  | ㈜꽃뿐이네         | 180111-1168***  | 0178210274100000161 | 10,134,000 |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24 번길 |
| 8  | 조해웅           | 1992.11.11.     | 0178210274100001095 | 1,102,000  | 울산 남구 신정로 203 번길   |

| 구분 | 대상자          | 생년월일/<br>법인등록번호 | 과태료 고지번호            | 과태료(원)     | 체납자 주소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9  | 현희철          | 1985.11.10.     | 0178210274100001523 | 4,042,500  |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      |
| 10 | 황의식          | 1982.10.30.     | 0178210274100001776 | 8,085,000  | 경북 구미시 신시로 7 길    |
| 11 | 노태성          | 1990.04.20.     | 0178210274100001915 | 539,000    | 대구 동구 동부로 22 길    |
| 12 | 최형철          | 1978.10.18.     | 0178210274100002270 | 4,042,500  |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    |
| 13 | 이재혁          | 1999.09.04.     | 0178210274100002503 | 1,078,000  | 대구 달서구 월배로 24 길   |
| 14 | ㈜엘엠에스<br>코리아 | 180111-0806***  | 0178200274100000310 | 11,947,500 | 부산 사상구 대동로        |
| 15 | 곽경갑          | 1965.12.25.     | 0178200274100004465 | 9,558,000  |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|
| 16 | 권정내          | 1980.02.10.     | 0178200274100004484 | 9,558,000  |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      |
| 17 | 김정호          | 1973.02.28.     | 0178200274100003504 | 9,558,000  | 부산 동래구 명장로106번길   |
| 18 | 문성근          | 1980.01.29.     | 0178200274100004448 | 6,156,000  |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     |
| 19 | 배태훈          | 1968.08.15.     | 0178200274100004447 | 2,850,010  |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|
| 20 | 신중길          | 1960.02.02.     | 0178200274100004426 | 8,602,200  | 울산 남구 봉월로14번길     |
| 21 | 이상협          | 1975.10.06.     | 0178200274100003505 | 9,558,000  |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71길    |
| 22 | 이정수          | 1981.12.15.     | 0178200274100003506 | 9,558,000  |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  |
| 23 | 이준일          | 1966.07.28.     | 0178200274100000257 | 9,558,000  | 울산 중구 반구정15길      |
| 24 | 이진희          | 1983.06.02.     | 0178200274100000313 | 10,620,000 | 경기 남양주시 덕소로       |

| 구분 | 대상자 | 생년월일/<br>법인등록번호 | 과태료 고지번호            | 과태료(원)     | 체납자 주소 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5 | 조종애 | 1959.06.21.     | 0178200274100003269 | 13,275,000 |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     |
| 26 | 조현욱 | 1978.03.23.     | 0178200274100004491 | 9,558,000  | 인천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  |
| 27 | 차상원 | 1974.11.24.     | 0178200274100007288 | 4,298,400  |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   |
| 28 | 황금진 | 1984.08.12.     | 0178200274100004480 | 10,620,000 |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  |
| 29 | 황윤순 | 1983.04.03.     | 0178200274100003507 | 9,558,000  |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95번길  |
| 30 | 황창순 | 1972.05.19.     | 0178200274100010485 | 2,430,000  |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|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

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, 1207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